

#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8. 3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8. 31

다. 의안번호 : 제2005 - 44호

라. 상정일자 : 2005. 12. 5

##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가. 개정이유

○ 인터넷 및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입찰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입찰참가자에 대한 수수료(건당 1만원)조항을 삭제함.  
(안 별표1의 6)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 확대방안으로 입찰참가에 따른 참가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 것으로 입찰참가신청 방법이 종전의 수기에서 전자입찰제도 시행으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폐지하려는 것임.

○ 또한, 동 입찰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역건설업체의 부담경감을

이유로 그 동안 관련업계 및 협회로부터 수차례 폐지건의가 있었던 사항임.

○ 동 수수료는 거창군 조례로 수수료율을 결정한 것으로 수수료 결정시에는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으로 자체 원가분석 자료에 의하면 총원가는 109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10.12 감사원으로부터 전자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토록 하라는 감사처분요구 사항이 통보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